

추석 맞이
선물·식사
Q&A

청탁금지법 추석 선물·식사 궁금해요



국민권익위원회



Q

친구, 이웃,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추석 맞이 선물을 주거나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지켜야 한다?



A

아닙니다. 누구라도 공직자가 아닌 친구, 이웃, 연인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


국민권익위원회



Q

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, 고객, 또는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?



A

아닙니다.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




Q

친구, 지인, 이웃 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
상한액 이하의 선물만 줄 수 있다?



A

아닙니다.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
상한액을 넘는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넘으면
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
있으므로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


Q

추석 명절에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주고 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?



A

아닙니다.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넘어서 줄 수 있습니다. 또한,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





Q

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?



A

아닙니다.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





Q 인허가 등 민원 신청인, 인사·취업·입시·지도·단속·감사 등 대상자, 입찰 참가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상한액 범위 내의 선물이나 식사는 제공할 수 있다?



A 아닙니다.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.





Q

장인, 처형, 동서, 며느리 등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친족 사이라도 상한액을 넘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?



A

아닙니다.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공직자가 친족관계(「민법」 제777조의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)에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능합니다.

